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습지원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0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학습지원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2. 개정안 부칙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중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6.

3.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습지원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6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 부과를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생략)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5항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

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

□ 또한 학습지원교육은 학습지원 담당교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실시할 수 있는데, 학교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이 경우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동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³⁾.

1)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 이를 종합해보면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장은 학습지원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조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⁴⁾

□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학교장이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은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학교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 외에 교육부장관에게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인력의 배치·운용 제고를 통해 학습지원교육의 내실화가 기대됨.

[개정안과 시행령 비교]

시 행 령	개 정 안
학교장이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부는 현재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개별 학습활동에 도와줄 수 있도록 기초학력 협력강사와 같은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교과 수업에 추가 배치*하고 있고,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25년부터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26.6월 기준) 배치교: 4,680교, 지원 학급수: 29,155개, 강사수: 8,386명

** '27년까지 7,200교 확대(국정과제 101-1)

*** '25년: 3,453억, '26년: 4,904억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재량행위) ⁵⁾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기속행위).
--	---

□ 다만, 개정안은 학교장의 보조인력 채용시 교육감에게도 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에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반영하고 있으나, 교부금 대비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비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하는바⁶⁾, 재정 소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교육부> 국가 및 교육청의 한정된 인력과 재원 상황상 학교별로 임의 배치한 보조인력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은 어렵다면서, 국가와 교육청에서 학교의 규모, 교육 여건(도농, 학습지원대상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시·도교육청> ○ 이견없음: 대구 ○ 일부 수정: 부산(예산기획과, 중등교육과), 광주, 세종(학교정책과) - 개정안 적용 시 보조 인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 예산 편성 자율성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수정 필요 ○ 신중검토: 부산(노사행정정보과), 세종(노사정책과) - 동법 시행령 제7조6항에 따라 이미 학교의 장이 교육청에 보조인력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점, 교육청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⁷⁾

5)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교육부는 2025년 3,453억, 2026년 4,904억을 편성하였으나, 교부금 대비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비율을 2025년 49.8%, 2026년 54.5%로 저조하다고 설명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의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의무가 부과되는바, 재정 마련 등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7) 교육부는 기초학력 협력강사가 '26년 6월 현재 시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점, 협력강사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관련 지침에서 정한 비정규직 채용 요건에 부합하여 사전심사 과정에서 해당 인력의 채용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의 실효성을 저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